

심판부 운영 규정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심판부 운영 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부서는 본회 대회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며 심판부 운영규정(이하 '심판부' 라 칭함)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심판부는 소프트테니스 경기 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심판과 관련한 전반을 준비 관리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1) 심판준비

1. 심판 배정 계획 및 작성
2. 볼 규격 관리
3. 스코아 보드의 개시 및 관리

2)심판

1. 선수 유도
2. 매치의 심판
3. 채점표의 기입
4. 채점표의 제출
5. 심판에 관한 이의 및 제소의 대응
9. 심판단과의 연대 및 조정
10. 대회운영 요원의 확보 및 관리
11. 선수 리스트 작성 관리
12. 경기 규칙 및 심판 규칙 적용 및 관리
13. 기타 대회준비 및 운영에 관련한 전반적 업무(경기장 규격 및 점검 포함)

제4조(조직)

1. 본 경기는 부장 1인, 부부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한다.
2. 부장은 본회 경기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부원은 경기이사로 정한다.
3. 심판이사 외에 심판부장이 특별히 필요할 경우는 개최지 임원 또는 본회 임원 중 타 직무 임원에서 편성할 수 있다.
4. 간사는 본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5조(업무)

1. 부장은 본 위원회를 통괄, 감독한다.
2. 부부장은 부장 유고시 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심판부원은 심판부를 구성, 조직하고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4. 간사는 심판부를 운영 지원한다.

제6조(회의)

1. 회의는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진행한다.
2. 회의에서 결정사항은 재적부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부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판부의 부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심판부의 원활한 회의와 결정을 위하여 타 실무이사 또는 전문가, 사무처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부장이 사무처장과 전무이사와 협의하여 처리 하며 그 결과는 다른 부원에 차후 통보한다.

제7조(운영)

1. 매 대회시 마다 대회요강에서 심판부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진행한다.
2. 대회 요강에 없는 사항이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심판부에서 협의하여 처리한다.
단, 타 부서와 자문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대회운영 중 경기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 그 상황을 확인하고 정리하여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단, 가벼운 사항은 심판부 자체에서 경고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사무처리) 경기부의 사무처리는 본회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제9조(시행세칙) 심판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행세칙은 본 심판부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한다.

제10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3.11.5)로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9.12.13)로부터 시행한다.